

#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5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1. 19.  
제출자 김기남 의원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1월 19일 김기남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통학로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관련 부서 및 통학로 지정(안 제5조~제6조)
- 라.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위원회 운영 및 안전 교육(안 제9 ~제10조)
- 바. 안전교육 전담기관 및 지원(안 제11조~제12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등·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
- 조례 형식상 제1조의 “~함” 을 “~함을 목적으로 한다” 로 표기하고

제2조제1호의 “법” 을 “도로교통법” 으로 표기하고, 제3조의 “제2조 제2호” 를 “제2조제1호” 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- 아울러,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업무추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제7조 제2항제4호, 제6호, 제7호 및 제12호의 “보호구역” 을 “통학로” 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,
-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상위기관의 승인 사항이 아닌 자체 계획 수립 사항임을 고려하여 제7조제3항의 “협의·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” 를 “협의할 수 있다” 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
- 또한,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“대표자” 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2호 “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” 를 삭제하고, 제3호의 “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대표자” 를 “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” 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, 형식상 통일성을 고려하여 제4호의 “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” 을 “관련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” 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